

납품대금 연동제



대기업과 중소·벤처기업이 **함께 분담하여**
상생하는 따뜻한 연대,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작됩니다.



중소벤처기업부

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

▶ 납품대금 연동제란?

-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·공사·가공·수리 등을 위탁할 때
-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(물품등의 명칭,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, 기준지표, 산식 등)을
- ③ 약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」

▶ 수탁·위탁거래란?

(위탁기업)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(業)으로 하는 자가

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(이하 “물품 등”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“제조”)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,

(수탁기업)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

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에 포함.
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)



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·위탁거래

➤ (주요 원재료) **납품대금**에서 **10% 이상을 차지**하는 원재료

-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함 (부가가치세 포함)

※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총 납품대금이 기준

Q

원재료의 정의 및
범위는 무엇인지?

A

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, 화합물, 가공물,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
단,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





➤ 위탁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**소기업**에 해당하는 경우

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

➤ 수탁·위탁거래의 기간이 **90일 이내**인 경우

- 단,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

※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나 계약 경과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

➤ 납품대금이 **1억원 이하**인 경우

- 단,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

※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금액

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**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**한 경우

-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미연동계약을 발표('23.9.11) 하였으며,

그 **취지**와 **사유**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



▶ 환율을 반영한 기준 지표 설정

-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**연동의 대상은 아님**
- 다만,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재료 가격의 **기준지표에 고시환율을 명시**하여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기준지표를 설정하여 환율 변동 대응 가능



구분	기재사항
1. 납품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	동 케이블(CC-001)
2. 납품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	동
3.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	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(전기동 고시가) ※ 전기동 고시가(원) = 전월 LME 동 평균가격(USD) × 환율(원/USD) * 평균가격 내 프리미엄(USD) 포함
4.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	기준시점 : 조정일의 전전월 (평균) 비교시점 : 조정일의 전월 (평균)
5. 조정요건	±10% 이상 변동
6. 조정주기	1개월
7. 조정일	매월 1일
8. 조정대금 반영일	매월 1일
9. 납품단가 연동산식	조정될 납품단가(단위: 1개) =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× 동 중량(2ton) + 5,000원
9.1. 반영비율	100%
10. 기타사항	-



> 연동약정 예시

- 계약 체결(5월) 후 조정일(6월)이 도래한 경우

구분	전월 LME 평균(USD)	환율(원/USD)	전기동 고시가(원) (* 백원단위 반올림)
기준시점(2024.4)	8,676	1,340	11,626,000
비교시점(2024.5)	9,482	1,380	13,085,000

(CASE1)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내 환율 반영

- 원재료 가격 산정

$$\text{전기동 고시가(원)} = \text{전월 LME 동 평균가격(USD)} \times \text{환율(원/USD)}$$

$$\text{기준시점(4월) 고시가} : 8,676\text{USD} \times 1,340\text{원} = 11,626,000\text{원}$$

$$\text{비교시점(5월) 고시가} : 9,482\text{USD} \times 1,380\text{원} = 13,085,000\text{원}$$

- 원재료 가격 변동율은 **12.4%**, 이에 조정 요건인 **±10% 충족**

$$\{(13,085,000 - 11,626,000) / 11,626,000\} \times 100 = 12.6\%$$

- 이에 납품단가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

$$\text{조정될 납품단가} = \text{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} \times \text{동 중량(2ton)} + 5\text{천원}$$

$$\text{기준시점(4월) 납품단가} = 11,626\text{천원/ton} \times 2\text{ton} + 5\text{천원} = 23,257\text{천원}$$

$$\text{비교시점(5월) 납품단가} = 13,085\text{천원/ton} \times 2\text{ton} + 5\text{천원} = 26,175\text{천원}$$

∴ 동 LME 고시가 및 환율 상승에 따라

$$26,175\text{천원} - 23,257\text{천원} = 2,918\text{천원 증액 조정}$$

(CASE2)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내 환율 미반영

- 원재료 가격 산정

$$\text{LME 동 가격} = \text{전월 LME 평균(USD)}$$

$$\text{기준시점(4월) 고시가} : 8,676\text{USD}$$

$$\text{비교시점(5월) 고시가} : 9,482\text{USD}$$

- 원재료 가격 변동율은 **9.2%**, 이에 조정 요건인 **±10% 미충족**

$$\{(9,482 - 8,676) / 8,676\} \times 100 = 9.2\%$$

∴ 이에 납품대금 조정 요건 불성립으로 납품대금 미조정



➤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이란?

-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시 필요한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 약정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
- 지원대상 : 『중소기업 기본법』 상 중소기업

* 『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위탁·수탁기업 또는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원수급 사업자

● 지원내용

구분	지원 내용	대상	지원금액	지원규모
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	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(재료비) 금액을 확인하여 10%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 및 확인서 발급	수탁기업 (수급사업자)	정부 지원 100%	1,000개사 내외
연동약정 컨설팅	제도 교육,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	위탁·수탁기업 (원·수급사업자)		

*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



> 신청 · 접수

- 공고시기 : '25년 2월 ~ '25년 12월 * 납품대금연동제.kr 홈페이지 참고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(pis@win-win.or.kr)
- 제출서류 : ①사업 참여신청서, ②개인정보 동의서, ③사업자등록증, ④중소기업확인서(유효기간 내)
- 요건검토 : 수·위탁 거래, 하도급 거래 해당 여부
- 추진절차



- 문의처 : 연동지원본부(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)
(전화) 02-368-8962, 939, 969 (이메일) pis@win-win.or.kr